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5
----------	------

발의연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강선우·권철승·최인호
김진표·신동근·강병원
서영석·김철민·전용기
민홍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성능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센서형 측정기기 등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측정기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인증을 신청하여 그 성능을 인증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5.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분석측정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3(사물인터넷 기반 측정 기기의 성능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센서형 측정기기 등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측정기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성능을 인증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인증을 신청하여 그 성능을 인증 받아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 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p><u><신 설></u></p>	<p><u>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p>

제3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의2. (생략)

<신설>

3. ~ 4의3. (생략)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 4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5. ~ 7. (생 략)

③ (생 략)

5.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분석측정정보관리시스템
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